

**해를 거듭할수록
소송사건 수는 감소하는 반면
언론사의 승소율은 높아져**

- 미국 MLRC 2005년도 판결연구보고서 -

MLRC 2005년도 판결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 언론사의 편집내용(editorial content)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1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5건으로 평균 손해배상액은 3백4십만 불이었으며, 언론사가 지불한 손해배상액은 6십2만5천5백 불이었다.

이 보고서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 527건을 연구, 분석했다. 527건 가운데 506건이 종결되었고, 이 중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199건으로 전체 39.3%였다.

MLRC는 1980년 이래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들의 통계를 유지해 왔다. 이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볼 때 소송건수는 감소하고 언론사가 승소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론사가 패소한 경우 지불한 평균 손해배상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측은 1심에서 패소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제기했으며, 전체 소송건수의 1/3인 35.9%에서 1심 손해배상액의 판결이 유지되었다.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 사건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매년 평균 26.3건의 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1990년대에는 17.9건, 2000년대에 와서는 매년 평균

12.5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2004년도의 12건의 소송사건은 지난 25년간의 걸쳐 가장 낮은 건수이다.

둘째, 언론사가 승소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왔다. 2004년의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41.7%로 가장 높았다. 1심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1980년대 이래 매 10년마다 증가했다. 2000~2004년간의 언론사 승소율은 54.7%였다. 이에 반해 1980년대에는 35.7%, 1990년대에서 39.1%였다.

셋째, 공무원이나 개인보다는 공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가 더 많았다. 공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는 40.8%인데 비해, 개인의 경우는 38.5%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37.8%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는 지난 25년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넷째,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판결후의 재정신청이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자주 있었다. 1980년 이후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은 총 506건 중 307건으로 승소율은 60.7%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25.2%인 72건의 경우 재정신청에서 원고측이 패소했다. 또한 31건인 10.5%의 경우 재판부는 1심 판결 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측에 유리한 배심판결을 뒤집고 언론사측에 승소판결을 했다. 1심판결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의 47.8%가 항소심에서 삭감되거나, 폐기되었다.

다섯째, 1심판결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이 최종판결에서 확정된 경우는 전체 사건의 3분의 1이었다. 이 가운데 99건인 32%가 최종심에서 이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1심판결 후 재정신청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된 경우가 31건이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은 64건이 있으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이 35건이었다.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 조정된 경우는 132건이었다.

일곱째, 손해배상액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1심 판결에서의 평균 손해배상액이 3백40만 불인데 반해, 1990년대에는 3백20만 불, 1980년대에는 1백5십만 불이었다.

여덟째, 전체 손해배상액 중 보상적 손해배상금은 증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1심 판결의 손해배상금의 97.7%가 보상적 손해배상금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전체 보상금액 중 7.5%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이었으며 1980년대에는 61.7%가 1990년대에는 67%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이었다.

아홉째, 각 주별 언론소송사건을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펜실베이니아주 32건, 텍사스주 27건, 플로리다주 21건이었다. 그러나 인구당 신청건수를 비교해보면 델라웨어주가 1백만 명당 6.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열째, 각 주의 1심 법원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는 38.9%였다. 코네티컷주와 오리건주가 1심판결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비율이 83.3%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아칸소주, 하와이주, 캔사스주의 경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이 전혀 없었다. 평균 손해배상액은 오하이오주가 9백1십만 불로 가장 높았다.

열한째, 연방법원 1심 재판 사건을 보면, 제1순회법원이 16건, 제5순회법원이 15건이었다. 1980년대 이래 연방법원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비율은 40.7%였다. 제3순회법원의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70%로 가장 높았고, 제 4순회법원의 경우 30%로 가장 낮았다.

열두째, 매체별 신청건수를 보면 인쇄매체와 방송매체의 신청건수는 동일했다. 1980년대에는 인

쇄매체 특히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수가 206건이고 방송매체의 경우는 5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인쇄매체의 경우 32건, 방송매체의 경우 31건으로 그 격차가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방송매체의 경우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가 더 많았다. 1980년대에 방송매체는 47%가 승소한 반면 인쇄매체의 승소율은 36.1%에 불과했다.

열셋째, 최종심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은 변동이 심했다. 2000년대에는 최종 확인된 평균손해배상액은 7십9만5천 불이었다. 1990년대의 1백2십만 불에 비해 33.1%가 감소했다. 1980년대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2십7만7천 불이었다.

(www.medialaw.org MLRC 2005 Bulletin No.1) □

부당하게 제소된 교수의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인정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여성으로부터 「진료중에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埼玉의과대학 교수가 부당하게 제소당했다고 여성과 제소사실을 기자회견한 변호사, 이를 실명 보도한 毎日신문사 등을 상대로 총 2,71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 민사제42부는 지난 3월 24일 부당한 제소를 인정하여 여성에게 330만 엔, 명예훼손으로 변호사에게 55만 엔, 毎日신문사에 11만 엔의 배상을 각각 명령했다. 원고, 피고 3자 모두가 항소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00년 교수를 제소했으나 2002년 패소가 확정되었으며 毎日신문사는 2000년 3월 7일자 조간에 제소사실을 교수의 실명과 함께 보도했다.

재판부는 每日신문 기사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 「보도에는 일정한 사회적 의의가 있는데, 교수는 저명인이 아니어서 실명사용의 필요성에는 의문이 있다. 성희롱을 부당하게 강조하는 체재도 이용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4월 12일자) □

전국 15만여 명의 신문, 텔레비전 기자들의 기자증을 전면 갱신한 바 있다.

(신문협회보 2005년 4월 12일자) □

중국정부, 「미디어종사자 관리규정」 공포, 기사에 집필기자의 실명기재 의무화

중국정부와 공산당은 최근 국내 보도기관에 대해 기사 집필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디어종사자 관리규정」을 공포했다고 일본의 共同통신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조사보도, 지방정부에 대한 비판기사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중국의 미디어들은 조사보도를 할 때 기자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규정은 기자나 편집자에게 「당 선전」의 역할을 준수하고 당과 국가의 기밀 엄수를 요구하고 있어 지식인이나 미디어에 대한 규제강화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취재시 금품을 받거나 신문 구독을 강요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인정, 위반시에는 기자증을 몰수하고 5년간 미디어 관련 직장에서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금년 초 취재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사이버기자의 횡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AFP통신, 구글(google) 제소 자사 뉴스 무단게재 중지 요구

프랑스 AFP통신이 지난 3월 자사의 기사를 무료뉴스사이트 「구글·뉴스」에 무단게재 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검색엔진 최대업체인 미국의 구글(google)을 워싱턴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 제소사건은 세계의 미디어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AP통신은 지난 3월 22일 성명을 발표, 「뉴스도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AFP에 찬동을 표명했다.

AFP통신은 구글에 1,750만달러(약 18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지불과 자사기사의 게재금지를 요구했다.

재판에서 주목되는 것은 「구글·뉴스」에서의 기사제목의 게재가 저작물에 허용되는 공정이용(公正利用)의 범위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이다.

1985년에는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은 아니었지만, 설령 작은 인용문이라도 작품전체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을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AFP통신은 「게재된 제목과 한 문장만으로도 독자의 주의를 끌게 되며 나머지 문장 전체를 묘사하게 된다」고 저작권 침해조건의 충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 측이 피소된 후 AFP통신기사의 게재를 중단하는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더 복잡한 것은, AFP가 국제적인 통신이고 통신기사를 받는 쪽은 지명도를 올리기 위해 높은 인기가 있는 AFP뉴스를 게재하기를 원하는 미디어가 많다는 점이다.

구글은 세계속의 미디어 4,500사 이상의 사이트로부터 기사나 사진을 자동적으로 수집, 무료뉴스 사이트에 제목이나 축소사진을 일괄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다. 독자는 제목을 클릭하면 각 미디어의 뉴스페이지에 접속하도록 되어있다.

미국의 대형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야후(yahoo)는 AFP를 포함한 일부미디어에 뉴스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구글은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5년 3월 29일자) □

웹사이트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사법관할권 문제로 보도기관들 긴장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지는 지난 3월 8일 동지(同紙)의 온라인 기사 등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거주 전 유엔직원이 제소한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캐나다에서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한 1심판결을 뒤집어 주도록 요구했다.

이 소송의 결말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서부의 가나 출생인 이 직원은 1997

년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로 아프리카 근무시의 성적(性的), 금전적 스캔들이 보도되어 명예훼손의 피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900만 캐나다 달러(약 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1심은 원고가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던 동 신문은 이 직원의 인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어야만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직원이 주장하는 근거는 해당 기사가 계속해서 캐나다에서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이며,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나라에서 출판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인정된다면 웹사이트로 세계의 뉴스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보도기관은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워싱턴포스트 측은 이 직원이 온타리오주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당시는 케냐에 살고 있었으며 2000년까지는 온타리오주에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에는 이 문제에 대한 사법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NN, 뉴욕타임즈 등 미국 내외의 50여 미디어들도 이것이 인정되면 일부국가로부터의 웹사이트의 액세스를 차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보고 워싱턴포스트지를 지지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5년 3월 29일자) □

아일랜드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될 위험에 처해

아일랜드 법무부장관 Michael McDowell이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될 위험에 처해있다. 이는 그가

The Daily Ireland지는 진보적이 IRA를 지지하기 위해 역사를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The Daily Ireland지 발행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McDowell은 “The Daily Ireland는 나치즘 정권의 일간지인 Volkischer Beobachter과 유사하며, IRA의 후원을 받고 있다.”면서 신페인당의 지도자인 Martine McGuinness와 Gerry Adams가 IRA 평의회 위원이라고 주장해 더욱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Belfast 지역 The Daily Ireland지 대변인은 “법무장관이 파시즘적이고 불법적인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은 진행될 것이다. 그의 주장은 쓰레기이고 명예훼손적이며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다.”면서 “우리는 발행초부터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선호하며 어떤 특정인을 위한 나팔수가 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를 발전시키는데 또 다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우리를 법무부장관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Press Gazette 2005년 2월 25일자) □

Meyer 위원장은 언론사에 벌금을 물리는 제도는 “대단히 파괴적인 발상”이라면서 “벌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찬성한다면 물론 그 금액은 상당한 액이 될 것이다 이의 도입은 이에 반대하는 측과 격렬한 법률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불만신청인이고, 오직 변호사들만이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벌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편집인들은 정정보도나 위원회의 결정을 지면에 효율적이고 현저하게 눈에 띄게 보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Meyer 위원장은 불만처리위원회 위원들이 기사제목 특히 전체 기사와 상당히 모순되는 기사 제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위원회는 기사제목은 기사의 본문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기사 말미에 제목과 일치되는 조금의 정보가 있다고 해서, 기사 제목에 대한 불만신청을 기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Press Gazette 2005년 3월 29일자) □

**보도윤리강령 위반 언론사에
벌금부과하는 제도 도입 않기로,
PCC 위원장 밝혀**

영국불만처리위원회는 보도윤리강령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편집인협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Christopher

**이라크 주둔 미군에 의한
로이터기자 폭행사건
재조사 안 해**

미 국방부는 이라크에서 있었던 로이터 현지 직원들에 대한 미군의 폭행사건을 재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로이터측은 폭행당한 3명의 기자에 대한 직접

심문없이 진행된 조사는 불충분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었다.

3명의 로이터 이라크직원들은 NBC 이라크 현지 기자와 함께 팔루자 인근에 있었던 미군 헬리콥터 추락 현장을 취재하던 중 미군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된 바 있었다. 구금 시 이라크인들은 미군으로부터 구타와 성고문 및 성적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인 Lawrence Dirra는 초기 미군의 조사 결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군은 이 사건을 충분히 조사했고, 이를 재조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로이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 세계면 편집담당자인 David Schlesinger는 “미 국방부가 확실히 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단히 실망했다.”며 재조사를 거부한 미 국방부를 비난했다.

(Press Gazette 2005년 3월 11일자) □

**가해자가 합리적인 손해배상금
지불을 약속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삭감할 수 있어**

영국 항소법원은 영화배우인 Nail이 Newsgroup News papers와 발행인인 Haper Collings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Nail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1996년의 명예훼손법에 따라 가해자가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

요한 판결로, 담당 판사인 Suid, May, Gage는 “가해자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이 합리적인 액수인 경우 피해자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Nail은 2002년 자신의 성적행동을 잘못 보도한 The News of the World와 발행인을 상대로 4만5천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사측은 보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음은 물론 3만7천5백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Nail은 이를 거부했고, 법원이 3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Nail측 변호사는 3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며, 1996년 법에는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이 설사 이 규정을 적용 손해배당금을 삭감한다면, 무책임한 언론을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문에서 May 판사는 “명예훼손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어느 정도 삭감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발행인들이 냉정한 판단하에 기꺼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단했다. 왜냐하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은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피고측은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사과문마저 게재된다면 이는 실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측의 사회적 평판 또한 최대한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5년 1월 7일자) □